

고용촉진장려금('21.9.1.~9.30. 채용)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

**2021. 12. 31.
고용노동부장관**

1.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**'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대상**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.

2. '21.9.1.~9.30.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*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**'22.1.3.부터 '22.1.24.까지 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서(참고2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*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(워크넷)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

3.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,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*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 지급 신청서(참고3)와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내역 등)

4. 기타 세부 지원요건은 사업개요(참고1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고용촉진장려금('21.9.1.~9.30. 채용) 사업개요

□ **관련규정**

-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
- 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-1 호)

□ **사업개요**

- (목적) '21.9.1.~9.30. 기간 중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'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조기마감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- (지원대상) '21.9.1.~9.30.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*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주

(단,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함)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 (워크넷등)에 구직등록을 하고,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

*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(단,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)

○ (지원요건)

- ①1개월 이상 실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(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), ②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, ③고용보험 피보험자(상용) 가입
- *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
- * **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**
- **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)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**

○ (지원내용)

-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(월할 지원 없음) 최대 360만원 지원(연 2회 최대 1년 지원,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% 한도 내)
- *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: 6개월분 지급
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: 12개월분 지급

□ 접수방법

① (사전 신청서) '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

-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(우편, 방문 등)

*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

- 신청기간: '22.1.3.(월) ~ '22.1.24.(월)

② (지원금 신청)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(단,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

- 사업주에 한함)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,
-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 지급 신청서(별지 사업주확인서, 세부 목록 포함),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내역 등)를 구비하여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신청(우편, 방문 등)
- *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

참고2 고용촉진장려금('21.9.1.~9.30. 채용) 사전 신청서

■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0호 서식]

「고용촉진장려금('21.9.1.~9.30. 채용)」 사전 신청서

※ 동 사전 신청서는 지원 규모 확인 및 지원 요건 안내를 위한 것으로, 지원금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1. 사업장 현황			
사업장명			사업장관리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소재지 주소			대표자
담당자 (신청서 작성자)	성명		전화번호
	전자우편 (이메일)		핸드폰번호

2. 사업계획 개요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일	[] 2021. 9. 1. ~ 2021. 9. 30.		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계약 유형	[]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	[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 전 직업안정기관 등 구직등록	[] 해당	[] 비해당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	[] 해당	[] 비해당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자	명		

< 주요 지원요건 >

※ '21.9.1.~9.30. 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(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)

※ 고용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하고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증인자를 채용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: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귀하

참고3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 지급 신청서

(2쪽)

■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1호 서식]

「고용창출장려금(□ 고용촉진장려금)」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4쪽)

1. 사업장 현황		<input type="checkbox"/> 우선지원 대상기업 ^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^②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규모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원방지 의무 위반 ^③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(관련 사업주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		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	
소재지 주소		대표자		
담당자	성명	전화번호		
2. 신청 내용		<input type="checkbox"/>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(서식 3쪽)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(서식 4쪽이하)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		
		신청내용		
		신청인원	신청금액	
□ 고용촉진장려금	기존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가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서지역 거주자	명 ^④ (피보험자수 30% 한도)	원
	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`20년 특례지원 (`20.7.27~`20.12.31.기간중 고용)	명	원
	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`21년 특례지원 (`21.3.28~`21.9.30.기간중 고용)	명	원
	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`21년 특례지원 (`21.1.1~`21.3.24.기간 또는 `21.10.1~`21.12.31.기간중 고용)	명	원
	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(`21.9월 중 고용)	명	원
□ 일자리 함께하기	증가 근로자	명 ^⑤	원	
(<input type="checkbox"/> 교대제개편 <input type="checkbox"/> 실근로시간 단축)	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	명 (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)	원	
□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		명 ^⑥	원	
□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		명 ^⑦	원	
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(합계)			원	
계좌번호	은행	(예금주:)		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「고용창출장려금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근로계약서 2.월별 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빙서류 4. 전자·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자리 함께하기 해당) 5.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6.경력·자격·학력요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, 7. 1-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
------	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(주민등록번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(고)인 또는 수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(고)인 (서명 또는 인)

접수번호	접수 연월일	결재 연월일
선람	담당	팀장
	과장	소장

210mm×297mm(백상지(80g/m) 또는 중질지(80g/m))

작성방법

○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
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은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에서 정한 기업
 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·건설업·운수업·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·소매업·숙박업·음식점업·금융업·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 - 산업별 기준 외: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○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

- 중견기업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○ 감원방지 의무기간(③)

-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
-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(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
- * 다만,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(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

○ 지원한도 인원 산정

- 지원한도 인원: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%를 적용하되,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%를 적용(다만,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)
-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(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)
-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(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)-(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)
-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
- 신종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

○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

-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
- 다만, 21년 9월 신규채용사업주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(22.1.3~1.24.)를 제출한 경우 기타 “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” 칸에 표기

※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

<별지 1> 사업주 확인서
 (*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)

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, 해당 부분(예, 아니오)에 진하게 체크표시(√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확인사항	예	아니오
고용창출장려금 (고용촉진장려금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) * 만약 체류 비자가 F-2, F-5, F-6 인 경우 ()안에 기재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(주15시간 이상)입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. * 채용시점에 졸업(수료)예정자인 경우 졸업(수료)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. (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 (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. () * 간접고용형태: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(근로자 공급, 근로자 파견, 용역, 도급, 위탁 등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(일용근로자) 또는 비상근속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- 인건비는 없습니다. () - 인건비가 있습니다. () *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(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()			

* 관련된 사업주란?
 ① 아직 전 사업이 인수, 합병,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, 합병,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② 아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③ 아직 전 사업과 자본, 자금, 인사,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 ④ 아직 전 사업의 시설, 설비나 그 원자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,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,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

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

귀하

<별지 2>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
 (*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)

I. 고용촉진장려금

<기존 유형>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
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신청유형 구분	이직전 1년 이내 사업장 동일·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근로계약 유형	고용일 (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	①~④ 번호기재		㉗~㉘ 번호기재				

<’20년 특례지원>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* ’20.7.27~12.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.
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신청유형 구분	이직전 3개월 내 사업장 동일·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근로계약 유형	고용일 (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	①~⑤ 번호 기재		㉗~㉘ 번호기재				

<’21년 특례지원 I>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* ’21.3.25~9.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.
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신청유형 구분	이직전 3개월 내 사업장 동일·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근로계약 유형	고용일 (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○○○	㉗	비해당		’21.5.2.	230만원	’21.5.2.~ ~’21.6.30.	200만원
△△△	㉘	비해당		’21.4.20.	220만원	’21.4.20.~ ~’21.8.19.	400만원

<’21년 특례지원 II>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* ’21.1.1~3.24 기간 또는 ’21.10.1~12.31.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.
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신청유형 구분	이직전 3개월 내 사업장 동일·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근로계약 유형	고용일 (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○○○	㉗	비해당		’21.2.2.	230만원	’21.5.2.~ ~’21.6.30.	200만원
△△△	㉘	비해당		’21.3.20.	220만원	’21.4.20.~ ~’21.8.19.	400만원

<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>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* ’21.9월중 채용하고, ’22.1.3.~’22.1.24. 기간 중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합니다.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이직전 1년 이내 사업장 동일·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근로계약 유형	고용일 (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○○○		㉗~㉘ 번호기재	’21.9.1.	230만원	’21.9.1.~ ’22.2.28.	360만원
△△△			’21.9.15.	220만원	’21.9.15.~ ~’22.3.14.	360만원

※ <작성방법>

1) **관련사업주**: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2) **근로계약 유형**: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

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정규직), ㉡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, ㉢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㉣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